

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1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교내 교직원, 대학(원)생 자녀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업무·학업 몰입도를 향상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음
- 나. 어린이집 운용에 따르는 제반업무 및 보육철학 제시, 예산계획 및 집행,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, 영유아 보호와 교육, 종사자 임용, 보육교직원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, 부모교육,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 등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업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3항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 - 추진필요성
 - 다양한 경험과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책임경영

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, 안전사고 대비 및
보육교직원 채용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조직체계 활용

다. 위탁사무 내용(위탁 대상 사무, 범위 등)

- 어린이집 관리,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재산, 시설, 장비등의 구매 및 관리
-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- 영유아 보호와 교육
- 예산계획 및 집행
-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- 부모교육 및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연계 및 교류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시립대학교 내 과학기술관 북측
- 규모 : 지상2층, 연면적 520.12m²
- 개원일 : '18. 3월('17. 11월 준공예정)
- 모집정원 : 65명(8학급)

구 분	출생일 기준 (2018년 입소기준)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		'17.1.1. 이후 출생	'16.1.1~ 12.31	'15.1.1~ 12.31	'14.1.1~ 12.31	'12.1.1~ '13.12.31
교실수	5	1	1	1	1	1
학급수	8	2	2	2	1	1
아동수	65	6	10	14	15	20
교사수	8	2	2	2	1	1
기 타	원장 1, 조리사 1, 보조교사 1					



사진설명

시설위치도



사진설명

조감도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'2018~'2020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운영위탁 대상 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함

사. 소요예산 : 472,233천원

○ 사업주 부담금(대학회계 시지원금) : 318,573천원

○ 보육료 지원금(국·시비 지원금) : 153,660천원

[산출근거]

- 보육아동 : 39명

(만0세 4명, 만1세 10명, 만 2세 10명, 만3세 8명, 만4~5세 7명)

- 종 사 자 : 11명 (원장 1명, 보육교사 8명, 보조교사 1명, 조리사 1명)

세 입		세 출	
계	153,660천 원	계	472,233천 원
사업수입 (보육료)	보육료(종일반 기준) 143,160천 원 · 0세 430,000원×4명×12월= 20,640,000원 · 1세 378,000원×10명×12월= 45,360,000원 · 2세 313,000원×10명×12월= 37,560,000원 · 3세~ 220,000원×15명×12월= 39,600,000원	시설운영비	363,609천 원
		(인건비)	계 313,609천 원 급여 227,756천 원 시설장(15호봉) 2,977,900원×12월=35,734,800원 교사(5호봉)1,828,800원×8명×12월=175,564,800원 취사부(2호봉) 1,371,400원×12월=16,456,800원 제수당 17,000천 원 처우개선비, 직책급 5,040천 원 사회보험 36,713천 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2,100천 원 대체인력 급여 2,000천 원 후생경비 3,000천 원
		(관리비)	공공요금,수용비 등 50,000천 원
보조금	누리보조(만3~5세) 8,100천 원 · 45,000원×15명×12월=8,100,000원 보육교사 중식비(서울시) 2,400천 원 · 25,000원×8명×12월=2,400,000원	운영비	70,249천 원 급간식비 3,800원×50명×23일×12개월= 52,440천 원 보육교사 중식비 = 2,400천 원 25,000원×8명×12월=2,400,000원 교재교구비 = 12,000천 원 1,000,000원×12월=12,000,000원 기타필요경비 = 3,409천 원
		시설비 및 자산취득	38,375천 원 시설비 = 10,000,000원 자산취득비 = 10,000,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= 18,375,000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 (조직담당관-12490, 2017.09.26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,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·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『영유아보육법』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-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김미경 (☎6490-6424)